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3
----------	----

2018년 9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8. 16.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8. 8. 21.
3. 상정일자 :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8 9월 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 및 미래복지서비스 창출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서울시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 예산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시복지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대상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 관련법령

- 공통법령 :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 례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주요사업

○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복지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 복지 분야의 교육 및 자문

○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등

○ 국내·외 복지분야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

○ 복지관련 자료 개발·관리 및 보급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18년 예산 : 26,200백만원

3) 출연의 필요성

- 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 선도적 복지정책 품질개발과 품질강화, 지역·주민 중심의 복지협력체계 구축, 공공성에 기반한 특화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복지공동체 서울을 만들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되어 있음에 의거하여,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여부에 대하여 예산편성 사전절차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는 무분별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출연 절차를 강화함에 있음.
 - 같은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1)되어 있으므로,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서울시 복지재단 출연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1) 신규대비표

지방재정법 [법률 제11900호, 2013.7.16.,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제18조(출자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출자(出資)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외의 단체에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신 설>	

2 서울시 복지재단 일반현황

가. 설립 목적 관련

- 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함으로써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는 재단의 사업범위를 다음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표> 서울시복지재단의 사업범위

1.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2. 복지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3. 복지 분야의 교육 및 자문
4.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6.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7. 국내외 복지 분야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8.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
9. 복지관련 자료 개발·관리 및 보급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위탁받는 사업
11.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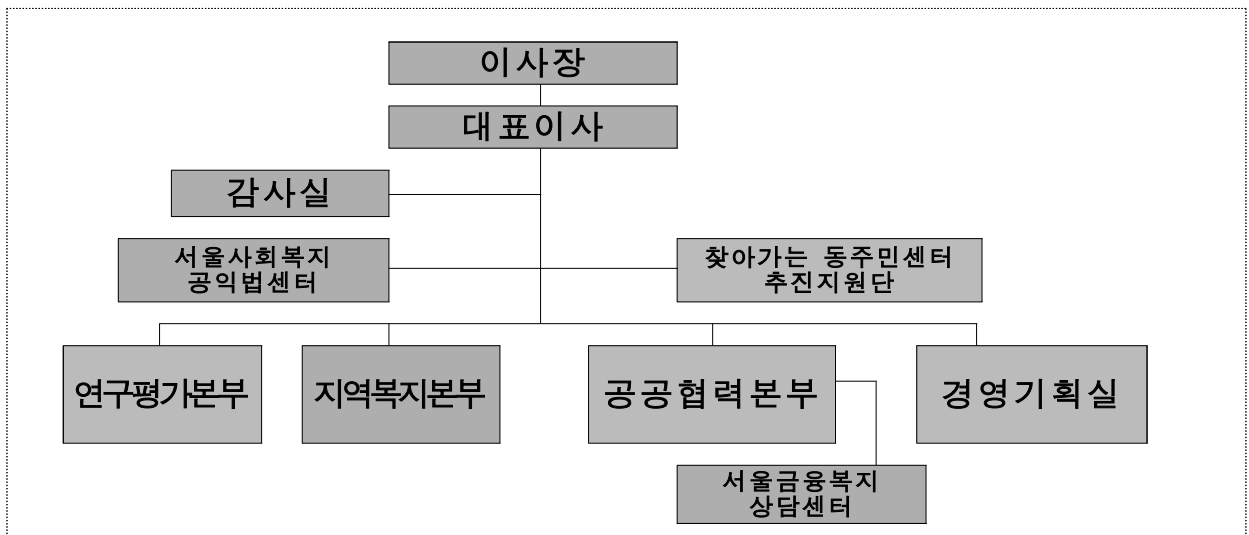
- 서울시 출연 복지전문기관으로 2003년 설립된 이후 서울시 복지향상을 위한 연구, 복지시설 인증에서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사업까지 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 왔음.

나. 조직 및 인력 관련

- 재단 정원은 2018년 8월 현재 164명(한시정원 7명 포함)이며, 1실, 1센터, 1지원단, 3본부가 편성되어 있으며 이를 총괄 조정하는 기획조정실이 1실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서울시복지재단 조직도

(’18. 8. 31. 기준)



- 서울시복지재단의 현재 인력 정원은 164명이며, 현원 158명으로 6명이 부족한 상태를 있음.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7등급 및 미화직군, 한시정원 직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6급 직제에서 부족인원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표> 서울시복지재단 정현원표

(’18. 8. 31.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대표이사	소계	사무직군·상담직군							미화직군	한시정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정원	164	1	163	1	10	22	24	23	52	22	2	7
현원	158	-	158	1	9	23	22	22	44	28	2	7

다. 예산 관련

- 집행부는 서울시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의 기관 운영을 위해 매년 출연금을 다음 표와 같이 편성·지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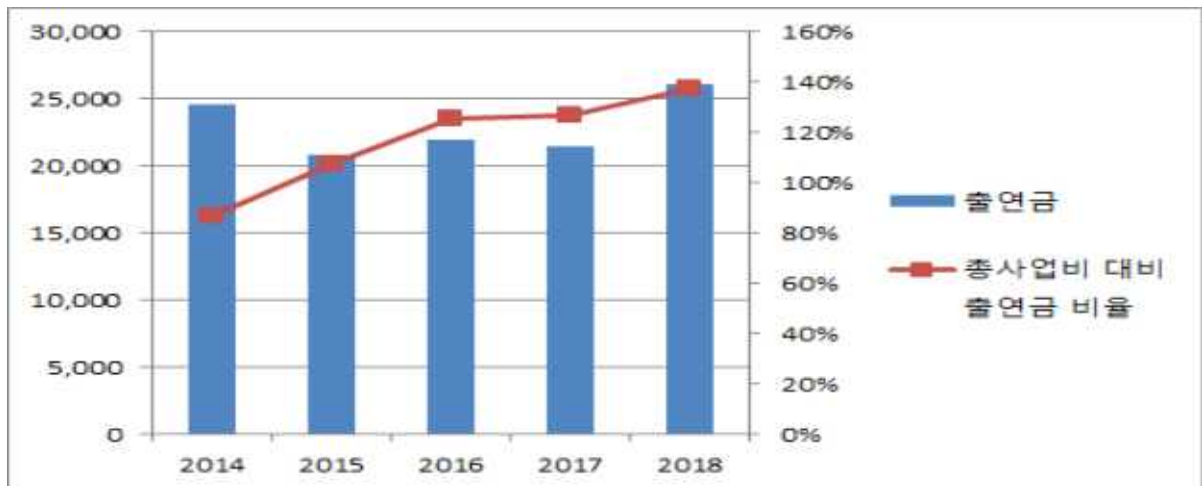
<표> 서울시복지재단 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18 예산(안)	2017 최종예산	증 감		비고
				%	
계	23,504	21,702	1,802	8.3	
정책사업비	8,617	7,810	807	10.3	
수탁운영비	360	380	△ 20	△ 5.3	
인 건 비	9,837	9,382	455	4.8	
운 영 경 비	3,153	3,055	98	3.2	
성 과 급	1,112	1,025	87	8.5	
예 비 비	425	50	375	750	

- 2018년 예산(안)의 경우 인건비(약 32.2%)와 사업비(약 41.2%)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행부가의 복지재단 출연금 5개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지속적인 증가폭을 보이고 있음.

<표 1> 서울시복지재단 5년간 출연금 현황



- 총사업비 대비 출연금 비율을 감안할 때 복지재단의 서울시 재정 의존도가 높은 실정인 바, 복지재단의 재정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출연금 이외 추가 재원사업 등으로 재정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중장기 계획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 복지재단의 출연금세부현황(참고2)을 보면 각 사업별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특히 성과급의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므로 이는 예산 편성 시 관례적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한 계속적 불용액 발생으로 이어지는 바, 이는 예산의 낭비로 이어져 결국 기회비용의 박탈을 가져옴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과학적 예산 수립이 필요해 보임.
- 또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등에 있어서 같은 계획의 추진실적을 적극 반영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총사업비 대비 출연금 비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사업비	28,276	19,398	17,508	16,956	18,998
출 연 금	24,587	20,806	22,004	21,483	26,072
총사업비 대비 출연금 비율	86.9	107.2	101.2	126.7	137.2

3 서울시 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종합검토

- 복지재단의 법령상의 근거와 설립 목적 및 기능 등을 감안할 때, 복지재단에 대한 2019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 현재 복지재단의 대표이사가 부재중인 상태²⁾인 바, 복지재단의 정책의 목표 및 사업방향이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앞으로 신임대표이사가 임명된 이후의 주요 정책 및 사업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겠음.
- 사업의 지속 가능성 및 안정적 예산 확보 여부, 재정 지출의 적정 규모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 및 업무양태에 따라 사업의 공정성 및 사회적 합의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됨..
- 앞으로 복지재단의 중장기 예산사업과 출연금 추계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임대표이사의 운영방향과 업무수행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 선임될 재단의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재단 사업계획 및 집행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토대로 2019회계연도 예산편성을 위한 출연동의안을 심의하는 방안을 모색할 당위가 있다고 보임.

2) 복지재단 전대표(남기철)는 2018년 7월 6일자로 사임하였고, 복지본부 기획관이 대행하고 있음.

참고자료 1 **서울시 복지재단 출연금 집행 현황**

■ 서울시 복지재단 5개년간 출연금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예 산 액 (백만원)		비 율 (%)	
	총사업비	출연금	총사업비 대비 출연금 비율	전년도 대비 출연금 증가율
2014	28,276	24,587	86.9%	△14.4
2015	19,398	20,806	107.2%	△15.4
2016	17,508	22,004	101.2%	5.7
2017	16,956	21,483	126.7%	△2.4
2018	18,998	26,072	137.2%	21.4
총액	101,136	114,952	113.6%	-
평균(5개년)	20,227	22,990	113.6%	△1.0

참고자료 2

서울시 복지재단 출연금 세부집행 현황

■ 2016년

(단위: 천원, %)

정책 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최종예산(A)	집행액(B)	집행률%	
합계			20,779,786	18,659,546	89.8	
선도적 복지정책개발	소계(연구개발)		604,051	566,490	93.78	
	연구개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81,130	77,810	95.91	
		서울시 위기가정 발굴, 지원사업의 성과와 방향연구	25,977	22,885	88.1	
		서울시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사업 성과분석	29,970	27,951	93.26	
		복지사업의 중복성 평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5,820	5,765	99.05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안전실태와 보호방안: 돌봄종사자를 중심으로	31,633	30,476	96.34	
		서울시 저소득층의 가계건전성을 위한 소비실태 분석	27,476	26,306	95.74	
		고령친화도시 조성	97,758	88,012	90.03	
		노인실태조사 : 서울시 노인복지이슈 중심	126,104	119,466	94.74	
		서울시 고독사 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	23,748	21,773	91.68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지역복지기관 협력방안 연구	16,300	14,880	91.2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운용 활성화 방안 연구	25,660	24,365	94.95	
		사회복지관 기본인력 중심의 사업표준화 연구	16,281	14,846	91.19	
		법인 직영 사회복지시설의 업무협약제도 도입방안	8,895	8,724	98.08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방안	11,230	10,959	97.59	
		꿈나래통장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10,230	9,810	95.89	
		복지이슈 Today		50,792	48,419	95.33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최종예산(A)	집행액(B)	집행률%
		연구기획 및 성과보고회	10,270	9,470	92.21
		서울시 복지정책 현안과제 연구	4,777	4,572	95.7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소계(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6,074,821	5,509,601	90.7
	지역복지	소계(지역복지)	1,516,586	1,424,730	93.94
		주민주도형 지역복지모델 개발	573,129	536,860	93.67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변화 지원	127,726	122,537	95.94
		나눔이웃 활성화	306,260	285,865	93.34
		임대지역 주민주도형 경제모델 지원	111,035	105,968	95.44
		서울품앗이	63,014	54,096	85.85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활성화	15,738	13,462	85.54
		공유복지플랫폼 운영	107,208	105,753	98.64
		아름다운이웃, 서울디딤돌	79,222	70,639	89.17
		사회복지 전문인력 역량강화	36,265	35,601	98.17
		사회복지 모금전문가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62,811	61,728	98.28
		민간자원개발 및 나눔네트워크 활성화	20,228	19,226	95.05
		2016 민관 통합사례관리 역량강화 지원	13,950	12,995	93.15
	공공협력	소 계(공공협력)	2,177,161	2,038,832	93.65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252,130	241,296	95.7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	79,100	72,946	92.22
		장애인가족지원센터	93,730	86,086	91.84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1,752,201	1,638,504	93.51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계(공익법센터 운영)	65,520	63,868	97.48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65,520	63,868	97.48
	찾아가는	소 계(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290,000	264,690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최종예산(A)	집행액(B)	집행률%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자치구 소통.협력	40,000	34,553	86.38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자치구 추진지원단 지원	16,000	13,309	83.18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찾아가는 복지 활성화 지원	48,000	43,811	91.27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민관기관 거버넌스 구축	26,000	23,902	91.93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60,000	55,141	91.9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40,000	38,500	96.25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역량강화 지원	60,000	55,475	92.46
	사회서비스제공 시범사업	소 계	300,000	113,325	37.77
		사회서비스제공시범사업	300,000	113,325	37.77
	전략경영	소 계(전략경영)	1,725,554	1,604,155	92.96
		전략경영 및 성과평가	80,000	76,187	95.23
		서울복지 미래비전 수립	13,000	11,370	87.46
		복지거버넌스 강화	29,900	25,378	84.88
		글로벌복지 교류네트워크 및 국제화	650,000	611,436	94.07
		복지서울 홍보	187,050	174,519	93.3
		시민고객가치향상	8,100	6,553	80.9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3,200	1,547	48.35
		혁신경영	21,100	18,714	88.69
		2016년 전산자원 유지보수 및 운영	140,936	134,880	95.7
		2016년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운영	133,000	125,900	94.66
		정보시스템 통합 보안관제서비스 도입	14,400	13,160	91.39
		사업 운영 시스템 고도화	99,890	90,310	90.41
		개인정보 영향평가	81,740	73,150	89.49
		업무용 pc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도입	25,850	25,320	97.95
		재단 전산실 이전 구축	81,500	77,615	95.23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최종예산(A)	집행액(B)	집행률%	
		노후 전산장비 교체	155,888	138,116	88.6	
수탁사업	수탁사업 운영	소 계(수탁사업 운영)	1,232,996	1,158,372	93.95	
		고령친화도시 아시아태평양네트워크 구축사업	155,000	155,000	100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추가 개발	59,989	59,989	100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시범평가	211,935	211,935	100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297,956	297,956	100	
		2016 읍면동 사례관리 실무과정	18,300	12,624	68.9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	64,000	60,459	94.47	
		장애인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재정립 연구	30,000	28,705	95.68	
		기능보강사업 타당성검토 및 집행점검	149,380	143,639	96.16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및 모니터링	133,071	89,782	67.47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	22,472	15,017	66.82	
		서울형 요양시설인증	57,106	49,480	86.65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 평판지수 연구	30,470	30,470	100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 환경지수 연구	3,317	3,317	100	
일반관리비	소 계(일반관리비)		11,874,203	10,845,512	91.34	
	인건비	소계(인건비)		8,757,753	8,002,494	91.38
		인건비	급여	4,424,020	3,959,607	89.5
			제수당	1,654,967	1,432,386	86.55
			퇴직급여	817,238	817,238	100
			기간제근로자보수	399,040	345,371	86.55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462,488	1,447,893	99
	운영경비	소계(경비)		3,116,450	2,843,018	91.23
	운영경비	경비	도서인쇄비	10,450	10,129	96.93
			지급수수료	68,400	60,313	88.18
수선유지비			216,310	182,256	84.26	

정책 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최종예산(A)	집행액(B)	집행률%
		교육훈련비	172,980	153,358	88.66
		보험료	10,025	4,054	40.44
		지급임차료	652,284	643,036	98.58
		복리후생비	1,044,299	984,485	94.27
		업무추진비	74,400	47,439	63.76
		수도광열비	61,600	36,896	59.9
		포상금	9,600	6,100	63.54
		차량유지비	11,000	10,295	93.59
		자산취득비	142,352	135,379	95.1
		회의운영비	80,800	75,232	93.11
		소모품비	92,471	90,127	97.47
		관서업무비	46,440	44,237	95.26
		보상금	90,889	75,352	82.91
		여비	182,783	161,559	88.39
		공공요금및제세	149,368	122,769	82.19
성과급	성과급	성과급	943,715	579,571	61.41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50,000	-	0

■ 2017년

(단위: 천원,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최종예산(A)	집행액(B)	집행률
합 계			21,702,000	20,246,930	93.3
선도적 복지정책개발	소 계(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1,809,378	1,661,471	91.8
	서울시 및 자치구 복지정책 연구개발	소계(복지정책 연구개발)	684,353	633,460	92.6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101,195	90,875	89.8
		2017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89,812	86,501	96.3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성과평가연구	37,627	35,440	94.2
		가족돌봄제공자 지원방안 연구	27,590	26,540	96.2
		서울시어르신사회참여활성화 방안 연구	7,431	7,424	99.9
		희방두배 청년통장 사업성과 연구	36,124	32,738	90.6
		서울시장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24,688	24,470	99.1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성과 연구	50,301	46,581	92.6
		사회서비스인증제도성과및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74,284	70,918	95.5
		서울시공공직영재가장기요양사업 표준운영방안 연구	33,048	32,446	98.2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운영 발전 방안 연구	11,039	10,921	98.9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52,940	40,902	77.3
		사회복지시설혁신적운영모델 개발 연구	21,688	19,820	91.4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개선방안 연구	21,720	21,264	97.9
		복지이슈 Today	50,340	48,138	95.6
		연구기획 및 성과관리	15,610	15,327	98.2
		서울시 복지정책 현안과제 연구	28,916	23,154	80.1
	선도적 프로그램 기획 및 인큐베이팅	소 계		1,040,076	948,208
사회복지 공공형 모델 시범운영		313,714	308,882	98.5	
서울형 재가장기요양 공공성강화사업		310,000	260,370	84	
고령친화마을 시범사업		416,362	378,956	91	

	증장기 서울복지 미래비전 수립	소 계	84,949	79,803	93.9	
		서울시사회보장계획수립을위한 기초연구	46,994	45,472	96.8	
		지속가능한복지발전을위한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12,494	10,700	85.6	
		서울형 공공복지전달체계 연구	25,461	23,631	92.8	
소 계(참여와 협치기반의 복지)			1,557,350	1,477,021	94.8	
참여와 협치기 반의 복지	지역사회조직 화 활동의 지원	소 계(지역사회조직화 활동의 지원)	1,090,798	1,035,608	94.9	
		주민주도형지역복지모델개발	561,837	544,755	97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변화지원	180,781	165,819	91.7	
		나눔이웃 활성화	109,490	97,941	89.5	
		임대지역 주민주도형 경제모델 지원	91,125	88,585	97.2	
		서울품앗이	54,200	52,294	96.5	
		복지공동체사업 현장연구 지원	44,750	42,813	95.7	
		지역복지 학습공동체 지원	48,615	43,401	89.3	
	지역중심형 자원네트워크 활성화	소 계(지역중심형 자원네트워크 활성화)	222,756	214,309	96.2	
		아름다운이웃, 서울디딤돌	143,697	137,259	95.5	
		민간자원네트워크운영및나눔문화 활성화	79,059	77,050	97.5	
	국내외 교류와 복지네트워크 강화	소 계	243,796	227,103	93.2	
		복지거버넌스 강화	19,900	17,387	87.4	
		글로벌복지교류네트워크 및 국제화전략사업	36,846	33,347	90.5	
		복지서울 홍보	187,050	176,369	94.3	
	소 계(복지현장의 지원강화)			1,035,209	968,399	93.5
복지현 장의 지원강 화	교육 및 정보공유체계 마련 등 역량강화	소 계	177,966	174,306	97.9	
		공유복지플랫폼 운영	134,540	131,153	97.5	
		사회복지 전문인력 역량강화	10,960	10,919	99.6	
		사회복지 모금전문가 양성	32,466	32,235	99.3	
	소 계			282,850	248,808	88
	서울형 평가인증 고도화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사업	200,000	187,554	93.8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사업	38,950	21,607	55.5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 양성 및 평가지원	43,900	39,647	90.3	

			454,371	427,438	94.1
공공복지전달 체계 혁신의 지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민간복지기관 협력촉진 시범사업	70,000	62,040	88.6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자치구 소통 협력	52,040	50,919	97.8	
	찾아가는동주민센터컨텐츠개발 및 운영지원	139,585	130,695	93.6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역량강화 지원	41,750	40,747	97.6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민간통합사례관리 지원	57,480	53,481	93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실천사례 발굴 및 보급	40,000	38,639	96.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53,516	50,919	95.1	
	사회서비스 품질과 공공성 강화	기능보강사업 타당성검토	120,022	117,847	98.2
공공성에 기반한 특화서비스 운영	소 계(공공성에 기반한 특화서비스 운영)		2,351,453	2,253,063	95.8
	금융복지의 융합적 상담과 복지서비스 운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206,680	192,177	93
	복지법률서비스 지원과 사회권 보장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147,980	132,883	89.8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자산형성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1,801,451	1,745,054	96.9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지원	소 계	195,342	182,950	93.7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	90,344	83,633	92.6
장애인가족지원		104,998	99,316	94.6	
소 계(신뢰와 금지의 조직문화 구축)		1,056,757	1,002,740	94.9	
신뢰와 금지의 조직문화 구축	소 계		123,600	112,942	91.4
	혁신, 공정, 투명의 조직운영 관리	전략경영 및 성과평가	110,000	100,184	91.1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3,200	3,109	97.2
		창의경영	10,400	9,649	92.8
	소 계		903,707	862,127	95.4
	효율적이고 안전한 경영정보 보안시스템	2017년 전산자원 유지보수 및 운영	149,998	139,600	93.1
		2017년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운영	149,447	141,890	94.9
		노후 전산장비 교체	154,793	145,069	93.7

	구축	사업관리기반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349,199	340,729	97.6
		정보시스템 통합 보안관제 서비스		23,200	20,560	88.6
		사업운영 시스템 고도화		77,070	74,280	96.4
	소통과 협력의 노사문화 구축	소 계		29,450	27,671	94
		시민고객가치향상		11,000	9,232	83.9
		상생의 노사 파트너십 구축		18,450	18,439	99.9
수탁사 업	소 계		380,000	374,315	98.5	
	수탁운영사업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360,000	360,000	100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처우개선방안 연구		20,000	14,315	71.6
기관운 영비	소 계(기관운영비)		12,437,252	11,727,830	94.3	
	인건비	인건비	소계(인건비)	9,382,510	8,981,440	95.7
			급여	6,352,996	6,126,883	96.4
			제수당	1,479,228	1,397,260	94.5
			미화직보수	45,269	45,269	100
			기간제근로자보수	595,364	505,987	85
			퇴직급여	909,653	906,042	99.6
	운영경비	경비	소계(경비)	3,054,742	2,746,390	89.9
			복리후생비	1,118,970	1,005,304	89.8
			여비	203,395	186,711	91.8
			공공요금 및 제세	159,705	155,838	97.6
			수도광열비	57,400	52,761	91.9
			소모품비	112,174	109,609	97.7
			피복비	4,500	4,488	99.7
			도서인쇄비	14,400	14,355	99.7
			지급임차료	156,000	150,128	96.2
			수선유지비	134,000	128,762	96.1
			차량유지비	11,000	10,834	98.5
			보험료	9,360	5,242	56
			지급수수료	307,560	279,703	90.9
업무추진비			74,400	54,249	72.9	
관서업무비	47,060	44,245	94			
교육훈련비	214,730	181,912	84.7			
행사홍보비	8,170	3,733	45.7			
회의운영비	101,350	63,650	62.8			

			보상금	143,719	118,888	82.7
			포상금	5,000	4,840	96.8
			자산취득비	171,849	171,139	99.6
성과급	성과급	성과급		1,024,601	782,090	76.3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50,000	-	0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63
----------	----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 및 미래복지서비스 창출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서울시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시복지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 관련법령
 - 공통법령 : 민법(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 례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주요사업

-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복지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 복지 분야의 교육 및 자문
-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등

다. 출연의 필요성

-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하고,
- 선도적 복지정책 품질개발과 품질강화, 지역·주민 중심의 복지협력체계 구축, 공공성에 기반한 특화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복지공동체 서울을 만들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조원상 (☎ 2133-7316)